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운영지침

2017. 9.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중국)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해 지정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으로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수출바우처사업”이라 한다) 운영계획 수립, 사업홍보,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가 운영·관리기관으로 위탁 지정한 중진공으로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점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동운영위원회”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수출바우처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운영기관간의 협의사항,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수출바우처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운영기관간의 협의사항,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등급 확정 등의 심의·의결 및 참여기업 선정을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중국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이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중국시장 개척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총괄수행기관”이란 특정 수출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해 관리기관으로

부터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7. “수출바우처”란 정부보조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금액으로 총 사업비가 표시된 가상증서(온라인포인트)를 말하며, 참여기업이 중국시장 개척활동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8. “사업비”란 참여기업이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부보조금”과 “기업부담금”의 합으로 조성한다.

9. “정부보조금”이란 운영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기업부담금”이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바우처 메뉴”란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통관·결제·물류 및 해외진출 등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 수출의 전 과정에 대한 세부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12. “중국시장 진출계획”이란 참여기업이 동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할 세부 프로그램 활용계획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3조(중기부) 중기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3.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4조(관리기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바우처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운영기관 관리·감독
3. 수출바우처의 총괄관리
4. 수출바우처 온라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수행기관 평가위원회와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수행기관 제출서류와 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7. 수출바우처사업 전반 및 수행기관의 성과평가, 분석 등 후속관리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2. 참여기업의 평가, 선정, 사업비 총괄 집행·관리
3. 참여기업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참여기업의 사업 진행현황 점검·평가
5. 참여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업의 성과평가, 분석 등 후속관리
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역본·지부)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사업 홍보와 참여기업 발굴
2. 참여기업 신청접수와 자격요건 확인
3.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4. 참여기업 중간 및 최종점검·관리 등
5.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정산

제7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침의 숙지와 준수
2. 협약상의 부담금 부담
3. 수출지원서비스 사용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

제8조(수행기관) ① 수행기관은 수출바우처사업의 지침에 따라 중국시장 개척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②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계약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총괄수행기관) ① 관리기관은 메뉴판 수출지원서비스 중 특정분야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대행할 기관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중에서 총괄수행기관을 관리기관과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② 총괄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을 대신하여 선정한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총괄수행기관은 해당분야에 선정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체결한 계약 내용과 수행 결과물을 검토 및 승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3장 중소·중견기업 중국시장 진출지원

제1절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진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진공은 기본계획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지원대상과 자격
3.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원내용, 세부사업 등
4. 참여기업 모집방법, 평가절차, 평가지표 및 선정방법 등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모집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제9조(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기업은 중국에 既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한다. 단,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1. 사업 참여 신청 종료일 기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2.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수출마케팅에 참여중인 기업, 중견기업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4. 직전년도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기업
5. 휴·폐업중인 기업
6.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7.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8. 기타 참여기업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제한 기업
9.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 외 별도의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중기부의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10조(신청서의 제출)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사업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 또는 법인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국세청 신고용)
5. 최근 3개년 총 수출실적 및 중국 수출실적 증명서(직수출에 한함)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7.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수시모집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참여기업 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서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기업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서류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글로벌 역량진단평가표”에 의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3년차 참여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외에 별지 제5호 “대면평가표”에 의거 대면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④ 1, 2년차 참여기업의 경우 “글로벌 역량진단평가” 점수를 100% 반영하고, 3년차 참여기업의 경우 “글로벌 역량진단평가”와 “대면평가” 점수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제12조(참여기업 선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 신청기업에 대해 “글

로별 역량진단평가”와 “대면평가”의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신청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세부계획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선정목표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별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1. 심의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참여기업 선정은 제12조 2항에 따른 지방중기청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선정목표 내에서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기업 중 사업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후보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기업 명단을 수출바우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3절 참여기업 사업계획 수립 및 바우처 발급

제13조(사업설명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대표 또는 해외마케팅 담당 임직원은 설명회에 1인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수립 및 바우처 발급) ①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지원받을 바우처 메뉴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수출지원 서비스 사용계획서” 및 별지 제7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추진협약서”를 운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추진협약서에 명시된 바우처 총액을

기준으로 바우처를 발급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의 바우처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대로 발급하며, 감액 시 발생한 기업부담금 잔액은 전액 환급한다.

④ 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바우처 총액을 감액 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4절 사업비 조성 및 집행

제15조(사업비 조성) ①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각 세부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보조금 지원한도는 전년도 직수출 규모에 따라 100만불 미만 5,000만원, 100만불 이상 7,000만원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0%로 한다.

③ 참여기업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추진협약서에 명시된 기업부담금을 운영기관이 제시한 기한 내에 전액 현금으로 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기준은 수출바우처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기한 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기업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사업 추진협약서에 명시된 바우처 총액을 기준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16조(사업비 집행) ① 참여기업은 중국시장 개척활동을 위하여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과 바우처 메뉴 상의 세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과 회사명 공동표기)을 신규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절 계약체결 및 해지

제17조(계약체결) ① 참여기업은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선정된 수행기관과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에서 세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양자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세부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세부지원 서비스 중 참여기업이 자체 추진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중국바이어초청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포함) 및 해외규격인증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 금액(공급가액, 정부보조금, 업체부담금, 부가세 등)
2. 계약 기간
3. 선금 지급여부

③ 제2항 제3호의 선금은 서비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서비스에 한해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공급가액의 30%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수출지원기반활용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OOOOO 프로그램 사업수행 표준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세부지원 서비스의 공급가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수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 초과금액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⑥ 세부지원 서비스 종료일이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추진협약서 상의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지) ①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점에 상관없이 해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출지원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재무상태 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수행기관의 사유로 수행기관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세부지원 서비스 계약의 해지는 해지비용 정산을 포함하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 후, 운영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해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부지원 서비스 계약해지를 승인받은 경우, 운영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행기관은 해당 서비스로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와 선금 전액을 운영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해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바우처 포인트 및 선금금 반환, 서비스 비용 별도 부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및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절 바우처 정산

제19조(바우처 정산 신청) ①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세부지원서비스 추진 완료분에 대한 바우처 정산을 운영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바우처 정산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2. 세부지원 서비스별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사본(별표 1)

3.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비 송금확인증(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직접납부)

②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세부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운영기관에 바우처 정산을 신청한다.

③ 참여기업이 자체 진행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중국바이어초청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포함) 및 해외규격인증은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운영기관에 직접 사업비 정산 및 바우처 차감을 신청한다.

④ 제15조 제2항의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바우처 정산 신청 시 초과부담분에 대한 송금확인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바우처 정산 결정 및 통지)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바우처 정산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우처 정산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여부
2. 세부지원 서비스 결과물 및 지출근거서류의 이상 유무
3. 세부지원 서비스별 바우처 정산 신청액
4. 참여기업별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및 보조금 지원비율

② 운영기관장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바우처 정산 신청서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산승인 :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보완요청 : 일부 시정명령으로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산불가 :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시정명령으로도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보조금 관리)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 근거서류 외에 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정산마감기일이내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상시 관리하고, 지급결의서, 입금영수증 등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및 당해연도 보조금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바우처 잔액처리)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종료 시 바우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잔액 중 기업분담금 전부를 환불한다.

제7절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관리

제23조(사업계획 변경) ①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수출환경의 변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바우처 총액 및 바우처 메뉴판 범위내에서 변경 추진할 수 있다.

1. 세부지원 서비스의 변경
2. 세부지원 서비스 수행기관의 변경
3. 세부지원서비스 추진금액의 변경

② 참여기업은 경영여건과 수출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협약종료 90일 전까지만 수출바우처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24조(성과관리) ① 참여기업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에 수출실적 등 성과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운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차년도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 교부 제외)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참여기업이 사업추진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8.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 교부된 보조금 중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시 그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참여제한) ① 운영기관장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등 각종 수출지원사업의 참여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단, 천재지변, 폐업 등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정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추진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분기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한 때에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재확정)한 경우

2. 바우처 발급,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및 변경한 경우

② 수행기관은 서비스 최종성과물을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필요시 세부지원 서비스 계획서 및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온라인에 의한 사업관리 등)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통계, 보조금 정산 등을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따른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의 행정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세부지원 서비스 및 정산 증빙서류

<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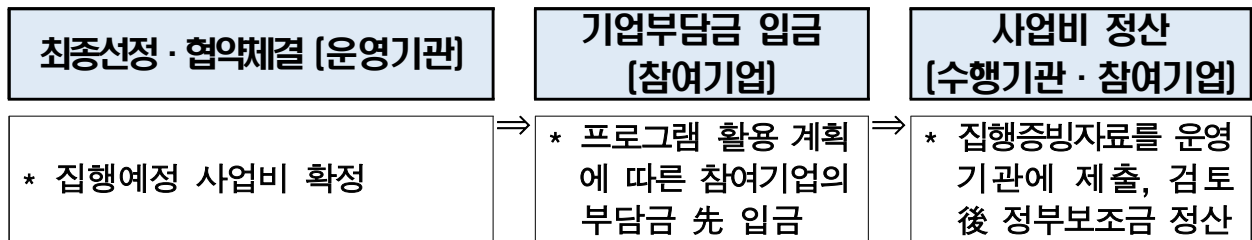
지원영역	지원항목	
수출준비 인프라	수출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카달로그, 제품 및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앱, 홈페이지,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등), 제품매뉴얼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정품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용인증서비스 등	
전략 컨설팅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투자 유치 컨설팅,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영문제안서 분석 컨설팅 등	
수출역량강화 교육	무역교육(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비즈니스회화 등), 해외마케팅역량강화 교육,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교육 등	
홍보/광고/마케팅	TV·신문·잡지·PPL 홍보, 홍보동영상 제작, SNS·검색엔진마케팅, 홈쇼핑/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입점대행, 판촉전, 해외독립몰 구축) 등	
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킷 마케팅, 경쟁제품 동향 조사,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 등	
전시(상담)회, 바이어매칭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세일즈랩,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	
수출관련서류 대행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필요 서류, 결제관련 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FTA 원산지 관련 서류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GMD*)
해외진출지원	해외투자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해외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지원,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 세부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지원내용, 표준가격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정산기준 및 각 프로그램별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절차

《 사업비 집행절차 》



- (최종선정 · 협약) 참여기업은 수출마케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로 지원금액 및 메뉴판 내 프로그램 확정
 - 확정된 프로그램 및 지원금액대로 협약 後 수출마케팅 실행
- (사업비 집행) 先 집행 後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관련 서류 등록
 - 증빙자료에 대한 운영기관 담당자의 검토 후 사업비 집행 처리
 - * 증빙자료의 미비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사업비 집행 불가
 - * 디자인 개발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경우 총괄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 처리
 - 운영기관에서 확인 후에 정부보조금 가상계좌에서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 처리
 - * 증빙자료의 등록 미이행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사업비 집행 불가
 - 송금증으로 증빙되는 현금송금의 경우만 집행으로 인정됨. 현금인출 후 집행하는 경우는 인정불가함(외화 등 현금화하여 활용도 불가)
 - 카드결제는 인정불가하며 단, 해외 지불인 경우만 카드결제 인정 (국내 수행기관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 사업비 프로그램별 집행기준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정산기준 및 증명자료 >

- 수행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선금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증권 2종 (중진공용, 참여기업용) 사본을 필수 업로드
- 先 집행 後 정산 원칙(부가세 지원불가하며 참여기업 부담)
- 지정 수행기관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정산신청 하며, 해외전시회 참가는 참여기업이 정산신청, 해외규격인증지원은 해외송금의 경우만 참여기업이 정산신청(수행기관 정산신청 원칙)

< 각 프로그램 별 정산기준 >

프로그램	수행기관	정산 기준
해외진출컨설팅	* 지정 수행기관	· 전자(세금)계산서제출(수행기관→참여기업) · 입금증(송금증)(부가가치세 등) · 용역계약서 · 완료보고서
무역실무교육	* 지정 수행기관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수행기관→참여기업) · 입금증(송금증)(부가가치세 등) · 용역계약서 · 완료보고서 · 교육이수증 혹은 교육참가확인서 · 교육안내자료(입금계좌 포함)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기업 자체 수행	· 박람회 부스임차료 Invoice 및 송금증 · 기타 추가장치비 Invoice 및 송금증 · 샘플운송비 Invoice 및 송금증 · 참가 결과보고서 · 참가증빙사진 ·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안내자료
기타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온라인 홍보 등)	* 지정 수행기관	·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입금증(송금증)(부가가치세 등) · 용역계약서 · 완료보고서

< 수출준비인프라 >

① 수출브랜드개발

-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기업 및 제품 브랜드 (BI, CI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수출브랜드개발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브랜드개발 완료 파일,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포함, 잔금결제 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② 외국어 온라인카탈로그, 브로셔, 제품매뉴얼 제작비

- 카탈로그 제작비는 기업의 제품(상품)의 홍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브로셔, 제품매뉴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국어 지원불가)(인쇄비 지원불가)

《 온라인카탈로그, 브로셔, 제품매뉴얼 제작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카탈로그, 브로셔, 제품매뉴얼 등 첨부, 잔금결제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구분	지원분야	표준 단가	기준분량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500만원	25페이지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500만원	20페이지

- * 표준 단가는 기준 분량에 대한 적정 금액이며, 동일 분량을 기준으로 표준 단가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괄 수행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한국디자인진흥원 ☎ 031-780-2034)

③ 외국어 디자인개발(제품 및 포장 등)

- 완성된 제품의 외국어 포장 디자인, 기타 수출을 위한 외국어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외국어 디자인개발(포장 및 제품 등)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디자인 결과물, 잔금결제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구분	지원분야	표준 단가	기준분량
디자인 개발	외국어 포장디자인	500만원	1개
	제품디자인	3,000만원	1개

- * 표준 단가는 기준 분량에 대한 적정 금액이며, 동일 분량을 기준으로 표준 단가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괄 수행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한국디자인진흥원 ☎ 031-780-2034)

④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상품페이지 제작

- 참여기업의 외국어 홍보용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상품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소요 비용 지급(한국어 비용 지원불가)

《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상품페이지 제작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완료 홈페이지 화면, 모바일 웹·앱 화면 등 증빙 첨부, 잔금 결제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구분	지원분야	표준 단가	기준분량
디자인 개발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용 앱 또는 웹	500만원	1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100만원	1개(5페이지 이내)

- * 표준 단가는 기준 분량에 대한 적정 금액이며, 동일 분량을 기준으로 표준 단가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괄 수행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한국디자인진흥원 ☎ 031-780-2034)

⑤ 외국어자료 통번역

- 개별 통·번역사를 섭외하여 활용한 경우, 증빙 및 통역료 기준상에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불가(수행기관을 활용)

《 외국어자료 통번역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번역의 경우 번역결과물, 통역사진 혹은 결과보고서) ④ 통역 또는 번역사 신분증 ⑤ 통역 활용 행사소개자료(통역의 경우, 완료보고서 형태로 작성) ⑥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⑦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⑥ 정품인증 서비스

- 중국 등 해외 진출 제품(화장품 등)을 가품, 모조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품임을 증명하는 제품부착 라벨, 전산 솔루션 등의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 라벨 제작비용, 외국어 랜딩페이지 제작비용 등 지원(단, 한국어의 경우 외국어 기준의 한국어 혼용 랜딩페이지의 경우 지원)
- 정부, 지자체 등의 '정품인증 서비스 지원사업' 과 중복지원 불가

《 정품인증 서비스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완료보고서(제품부착, 랜딩페이지 등 증빙자료 포함)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⑦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인증획득 서비스를 추진하고, 인증획득 여부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검증(인증사실 확인) 후 해당비용 지원(근거 : 관리기관 관리지침 및 총괄수행기관 운영지침)
- 정부, 지자체 등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 중복지원 불가
- (결과보고검토 및 인증사실확인)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 (APLAC, ILAC)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여부 및 관리감독을 통해 성적서·인증서의 위변조 등을 확인

*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 : 붙임 1 참고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07개) : 붙임 2 참고

결과보고 형태	내용	인증구분	제출기한
인증완료보고 (Set 개념)	- 인증완료개념 : 결과보고시 해당 인증 Scheme에서 요구되는 CoC 및 DoC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 CE LVD의 D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RoHs 성적서를 갖춘 상태에서 DoC 발급시 인정 예) CE MDD의 경우 C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임상실험레포트, 인증서 등을 갖춘 경우 CoC로 인정	인증 취득 완료	인증 획득 후 1개월 이내 (사업 기간 내)
부분완료보고	- 부분완료의 개념 : 결과보고 시 인증 Scheme에서 요구되는 CoC 및 DoC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는 경우로 적합으로 인정 완료된 성적서, 공장심사 리포트 및 인증서 등을 제출시 인정가능 - 수행기관 진행시 참여기업 서면 확인후 비용 인정가능 예) CE LVD의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RoHs 등 1개 이상 완료 된 경우 예) CE MDD의 경우 CoC 인정범위는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서, 임상실험레포트, 인증서 등 1개 이상 완료 된 경우	부분 완료 / 선수금 신청시 인정	관리 ·운영 기간 협의 후 (사업 기간 내)
성실실패보고	- 인증을 진행 중 부적합으로 발급된 성적 또는 인증서로 사업기간(1년)내에 성실히 인증진행을 위한 Debugging 등을 진행했으나 참여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부적합으로 판명된 성적서 또는 인증서 (성적서 및 인증서) - 수행기관 진행시 참여기업 서면 확인 후 비용 인정가능	인증 취득 실패 (성실 실패)	사업 완료 기간 1개월 전까지

- (선금 신청시 서류검토) 해외규격인증분야의 수행기관(또는 참여기업)은 선금 요청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나, 선금 요청기준은 해당 인증 Scheme의 요구되는 DoC 및 CoC를 진행 중 완료된 개

별성적서, 공장심사리포트, 인증서 및 해당 Invoice 및 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총괄수행기관에 제출·검토·승인 후 운영기관에 선금을 요청

* 수행기관은 서비스 공급가액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이 1개월 이상인 서비스는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에게 서비스 공급가액의 30%를 선금으로 요청가능

* 참여기업 단독 해외규격인증획득 진행시 선금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 **(중간보고 검토)**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의 경우 1회 이상 총괄수행기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

*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

* 수행기관 진행의 경우 : 참여기업의 검토 후 중간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단독 진행의 경우 : 참여기업 단독 제출

○ **(항목별 지원한도)**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용 관리

구분	지원분야	한도 금액		지원비율
①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①	실비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사용가능
②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②	실비	
③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등	③	실비	
④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④	$(①+②) \times 20\%$ $(①+②+③) \times 30\%$	
총비용*	해외규격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①+②+③+④		

※ 컨설팅비 책정기준 및 비용처리, 정산방법

- 1) 컨설팅비는 인증, 시험, 심사비의 20%, 공장심사 포함시 30%으로 책정
- 2) 수행기관과 진행시 수행기관에서 인증소요비용을 先부담 후 바우처 後 정산
- 3) 참여기업 단독 진행시 참여기업에서 인증소요비용 先부담 후 바우처 後 정산 (컨설팅비용 인정되지 않음)

※ 해외인증에 관련하여서 불가피 하게 해외로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일자 이전에 사용 계획과 예산 규모가 명기된 증빙을 해당 바우처 발급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집행 후 정산 관련 증빙을 총괄수행기관을 통해 서면 확인받은 경우에만 사후정산 가능(해외로 직접 집행 시, 반드시 총괄수행기관 先확인 필요)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Invoice ② 용역계약서 ③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등) 각 1부 ④ 완료보고서(< 별첨 >의 완료보고 증빙서류 참고) ⑤ 인증 만료기간이 확인 가능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⑥ 다음 각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인증서 사본 1부(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기술문서 1부(해당 인증 취득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장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⑦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 별도 해외 수행기관 활용 시 카드 결제 가능(총괄수행기관 선승인 필수)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문의처 : KTL 인증산업본부 해외규격인증센터(T. 02-860-1313~5)

⑧ 신용인증 서비스

- 수출을 위한 자사의 해외신용등급조회(영문보고서) 발급 서비스 비용 지원(단, 국내용 신용등급조회 지원불가)

《 신용인증 서비스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해외신용등급용 영문보고서, 잔금 결제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전략 컨설팅 >

① 전략컨설팅

- 전략컨설팅 지원내용
 -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 투자 유치 컨설팅,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인증비, 심사비 등 지원불가)
 -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 관세환급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 영문제안서 분석 컨설팅 등

《 전략컨설팅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잔금 정산시 제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수출역량강화교육 >

① 교육 지원

- 교육 지원내용
 - 무역교육(온·오프라인)
 -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 등
- 기존 인력의 수출마케팅 업무 수행을 위한 무역 실무교육의 소요 비용을 지급하며,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 가능

《 교육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교육 안내자료(입금계좌 정보포함) ③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참가확인서 ④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교육 참가자 성명확인) ⑤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부정적 집행 사례 ▶

- 참여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교육비를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있어 기업부담금을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또는 교육비 환급과정의 환급대상액을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 홍보/광고/마케팅 >

① TV · 신문 · 잡지 · PPL 홍보

- 해외 TV, 신문, 전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게재,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국내용 제외)
- 해외 고객 및 시청자를 대상의 광고 · 공중파 및 웹드라마 등에 참여 기업 제품의 간접광고(PPL)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국내방송 제외)

《 TV·신문·잡지·PPL 홍보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TV, 신문, 잡지, PPL화면 등 증빙자료 첨부)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②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 기업 및 수출 제품의 외국어 홍보 등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국어 비용 지원불가)

《 홍보영상제작비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총괄수행기관↔운영 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완료 동영상 증빙자료 첨부, 잔금 결제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구분	지원분야	표준 단가	기준분량
디자인 개발	외국어 동영상	700만원	5분

* 표준 단가는 기준 분량에 대한 적정 금액이며, 동일 분량을 기준으로 표준 단가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괄 수행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한국디자인진흥원 ☎ 031-780-2034)

③ SNS · 검색엔진마케팅

- 완성된 수출제품의 SNS 및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해외 B2B 사이트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SNS·검색엔진마케팅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홍보계약서 혹은 온라인신청서 ③ 완료보고서(SNS, 온라인사이트 등록 사진 또는 홈페이지 주소 URL, 클릭수 또는 view 포인트 등)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④ 홈쇼핑/온 · 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 참여기업의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한 홈쇼핑/온 · 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입점대행, 판촉전 등)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소임차비, 장치비, 물품운송비 지원(숙식비, 항공료, 다과비 등 경비 지원 불가)

《 홈쇼핑/온·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판촉전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④ 홈쇼핑/온·오프라인 입점결과 또는 판촉전 개최 결과보고서 ⑤ 홈쇼핑/온·오프라인 입점결과 또는 판촉전 개최 관련 증빙사진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조사 · 정보 >

① 조사 · 정보

○ 조사 · 정보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타겟 마케팅
-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 등

《 조사·정보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잔금 정산시 제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② 국외기업(바이어)신용조사

○ 국외기업(바이어)의 신용등급조회를 위한 서비스 비용지원

《 신용인증 서비스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완료보고서(신용등급보고서, 잔금 결제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전시(상당)회/바이어매칭 >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해외전시회 직접 출장 시)

- 제품홍보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및 추가장치비, 물품(샘플)운송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항공 등 교통운임, 숙식비, 통역비 등은 집행 불가
- 협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개별 참가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 협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의 신청을 위한 선납한 금액은 지원가능
- 지자체, 코트라, 중기청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전시회 지원불가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개별 참가전시회 지원불가 (ex.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부산광역시 등)
- 단, 정부 또는 민간협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관이 아닌 개별참가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기업이 전액을 부담하였고, 주관·주최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안 받고 참가 신청만 지원했다는 공문을 받을 경우 지원가능
- 수행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참여기업 자체신청 및 비용활용 후 정산
- (환율적용) ①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② 송금증에 적용환율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적용 (모든 VAT, 수수료 지원 불가)

《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 先 집행, 참여기업↔운영기관]	① 박람회 부스임차료 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및 (해외)송금증 사본_필수 ② 샘플운송비 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및 (해외)송금증 사본_해당시 ③ 기타 추가장치비 등 Invoice(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증 사본_해당시 ④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안내자료_필수 ⑤ 참가 결과보고서_필수(별지 서식 참고)** ⑥ 참가증빙사진_필수(별지 서식 참고)*** ⑦ 표준상당양식(표준 세일즈 리드 양식) 필수 * 카드결제시, 카드사용명세서 또는 결제카드 사본 제출

* 참여기업의 해외법인, 지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 해외법인 및 지사 등록증, 해외법인 및 지사에서 지급한 서류 추가제출(①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송금증과 ② 한국 법인에서 해당 해외법인으로 송금한 송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품목, 전시성과 및 만난 바이어 명함 등이 있어야 함

***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함

◀ FAQ : 해외송금 시 정부보조금 지원 ▶

해외송금을 위한 환율 적용시 업체의 실제 원화 지급금액이 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정부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지원함

* A업체의 해외전시회 배정금액이 10,000,000원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적용할 때의 원화금액이 9,999,997원일 경우, 정부보조금 : 기업부담금 비율이 9 : 1일 때, 9,000,000원이 아닌 8,999,000원을 지원(8,999,997.3원에서 절사)

◀ FAQ : 추가장치비 지원범위 ▶

기본 및 독립부스 이외에 전시회 부스 관련 인테리어(구조물) 관련 비용
ex) 테이블 및 의자 대여, 구조물 구축 비용 등 지원 / 전기사용료 및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지원 불가

②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정 수행기관 활용 또는 개별참가)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및 추가 장치비, 물품(샘플)운송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교통운임(KTX, 항공 등), 숙박비, 통역비 등은 집행 불가
- 참여기업 자체로 신청하는 국내, 해외 전시회는 [참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만 지원가능하며, 지정 수행기관을 통하는 이와 상관없이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는 지원가능
- 협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참가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 협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의 신청을 위한 선납한 금액은 지원가능
- 지자체, 코트라, 중기청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전시회 지원불가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시회 지원불가 (ex.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부산광역시 등)
- 단, 정부 또는 민간협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관이 아닌 개별참가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기업이 전액을 부담하였고, 주관·주최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안 받고 참가 신청만 지원했다는 공문을 받을 경우 지원가능

《 전시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박람회 부스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및 용역계약서 ② 샘플운송비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및 용역계약서 ③ 기타 추가장치비 등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및 용역계약서 ④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안내자료_필수 ⑤ 참가 결과보고서_필수(별지 서식 참고)* ⑥ 참가증빙사진_필수(별지 서식 참고)** ⑦ 표준상담양식(표준 세일즈 리드 양식) 필수 ⑧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수행기관 활용시에만 제출)

* 전시회 주최, 주관, 장소, 품목, 전시성과 및 만난 바이어 명함 등이 있어야 함

** 참가증빙사진에는 업체명이 나오는 배너와 바이어와의 상담 모습이 있어야 함

◀ FAQ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 ▶

1. 이름에 “국제” 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전시회
2. 단, 외국 바이어의 부스 참가, 전시회 주최측의 해외바이어 초청 전시회, 전시회의 개최 목적이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인 경우 “국제” 표기가 없는 전시회도 지원 [전시회 공식 사이트 참고]
3. 개별참가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전시회(102개 전시회 참조)
4. 상기 1,2,3호의 내용이 확인 불가한 경우 불인정

◀ FAQ : 추가장치비 지원범위 ▶

기본 및 독립부스 이외에 전시회 부스 관련 인테리어(구조물) 관련 비용
ex) 테이블 및 의자 대여, 구조물 구축 비용 등 지원 / 전기사용료 및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자원 불가

③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 참여기업의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설명회 등을 위한 비용지원
- 장소임차비, 장치비, 물품운송비 지원(숙식비, 항공료, 다과비, 인건비 등 경비 지원 불가)

《 외국바이어 대상 상담회/세미나/시연회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용역계약서 ③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④ 상담회/세미나 등 개최 결과보고서 ⑤ 상담회/세미나 등 개최 관련 증빙사진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④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시, 사전·사후 홍보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을 통한 부스참여율 향상 및 실질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마케팅지원
-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사, 자문 등 컨설팅 지원

《 해외전시회 사전·사후마케팅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잔금 정산시 제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⑤ 세일즈랩

- 수출경험이 있고,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에 현지기업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해 마케팅업무 대행서비스를 지원(성약에 의한 수수료(성공보수)는 참가기업이 별도 계약서 작성 및 부담)

《 세일즈랩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Invoice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잔금 정산시 제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수출관련서류대행 >

① 수출관련서류대행

- 수출관련서류대행 지원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대행 등 컨설팅
 -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서류작성 컨설팅
 -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 FTA 원산지 관련 서류 등

《 수출관련서류대행 컨설팅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잔금 정산시 제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해외진출지원 >

①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지원내용

- 해외투자진출자문,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컨설팅
- 현지법인 설립 컨설팅, 해외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지원 컨설팅

(설립비용, 소송비 등 미지원)

《 해외진출지원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잔금 정산시 제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②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 중소기업이 방문하는 출장지 주재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지원

※ KOTRA 서비스단가 참고

출장목적	서비스안내	서비스선택	수수료(VAT별도)
해외세일즈출장	해외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4개사)	일반서비스	30~50만원
		프리미엄서비스	60~100만원
해외 투자환경 조사 출장	해외투자유관기관 상담주선 :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일반서비스	30~50만원
		프리미엄서비스	60~100만원

* 일반서비스 : 바이어 상담주선 4개사

* 프리미엄서비스 : 바이어 상담주선 4개사 + 무역관 직원 동행 통역 및 차량지원 가능
(단, KOTRA 주선상담의 경우)

《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용역결과보고서 ④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⑤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③ 해외 지식재산권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 해외진출 제품에 대한 해외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실용신안 및 해외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서비스 지원
- 지재권 출원 및 등록관련 절차 대행비용, 컨설팅비용, 관납료 등 (단, 협약기간 내 종료된 건 한해 지원가능)

* 계약 시 산출내역에 포함되는 금액(내용)이라도 협약기간 내 미종료 시 지원불가
ex) 계약 시 특허 등록용 관납료가 포함되어도 협약기간 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납료 지원불가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재권등록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지재권 등록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 》

집행과정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사업비 지급 [참여기업→수행기관(VAT), 수행기관↔운영기관]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용역계약서 ③ 지적재산권 증빙서류(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증 또는 실용신안 등 증빙문서) ④ 용역완료보고서 ⑤ 입금증(송금증)(부가세 등) ⑥ 이행지급보증증권(중진공용, 참여기업용)(선금 신청 시 사본 제출)

* 부가세 지원 불가, 참여기업 동의 시 '선금-잔금(30%:70%) 집행'

* 참여기업은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하고 수행기관에서 정부보조금 정산

※ 해외시장 개척지원(GMD)

- 동 사업 수출바우처로는 해외시장 개척지원(GMD) 지원불가하며, 개별사업 신청하여 별도의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 GMD매칭 및 서비스지원 세부내역은 GMD사업 기준을 적용함

【별표 2】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참여제한 기준표

□ 수행기관 참여제한 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참여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1년

□ 참여기업 참여제한 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업기간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년
○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1년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참가신청서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업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공장)팩스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공 장				"			
	지점(1) (해외 포함)							
	지점(2) (해외 포함)							
	담당자/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4개 년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증가율
		매출액(백만원)						
		총 수출액(천불)						
		중국 수출액(천불)						
종업원수(명)								
수출업력		년	사업참여이력	신규(), 재신청()회 (참여년도:)				
주요 인력 운영	없음		있음		부서명		인원	
	해외마케팅·영업 인력							
수출 현황	수출품목명							
	주요수출국가 (3개국 이내)		현재					
수출 목표	목표 금액 (동 사업 참여성과)		대상 국가					
사업 개요								

당사는 중소기업진흥기법에서 추진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참여계획서(사업별), 2. 사업자등록증, 3. 재무제표(최근 4년), 4. 고용관련 서류(4년), 5.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온라인), 6.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등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기타 사업별 요청서류

‘17년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참여계획서
[회사명 : ○○○ 주식회사, [주] ○○○]

진출희망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중국수출목표액	(‘16년) → (‘17년)	달러 달러
프로젝트명	내 용			
프로젝트 개요	* 17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추진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부서명		핸 드 폰	
	직 위		e-mail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부서명		팩스번호	
	직 위		핸드폰	
			e-mail	

1. 일반현황

가. 회사연혁

년 월 일	주요내용(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공장이전, 해외조직 설립 등)

나. 대표자 이력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비 고
	~			
	~			
경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요 취급품목	
	~			
	~			

다. 수출이력(직수출액)

이 력	일반 수출연도	중국 수출연도
최초 수출연도	년	년
수출 1백만불 달성연도	년	년
수출 5백만불 달성연도	년	년
수출 1천만불달성연도	년	년
수출 2천만불 달성연도	년	년

라. 생산제품 관련 마케팅 활용 실적(대표적인 것)

활용 마케팅 유형	연도	제 품 또는 브랜드
EX) 방송광고, 전시회 참가	2016년	000선풍기, 브랜드 "Samson"
⋮		

2. 제품 및 기술현황

가. 수출 제품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생산품목 ^{주1)}				
용도 및 특성, 성장가능성				
중국시장 성장률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당제품(업종) 시장의 향후 성장률을 제시 예) 국가, 민간경제연구소, 언론 등에서 동 제품(업종)에 대한 시장분석자료를 인용하여 기재 - 단,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기업자체 분석자료 기재		
시장점유율	국내	국내시장 규모	제품 매출액	시장점유율(%)
	중국	중국시장 규모	제품 수출액	시장점유율(%)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주2)}		* 자료가 많은 경우 별첨 가능		
경쟁우위요소 ^{주3)}				
기술수준 (√)		첨단기술(), 기술집약제품(), 선진국 기술(), 국내기술()		

주1) 생산품목 개요는 주요 수출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주2)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 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주3) 국내외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성, 우위요소 기재

나. 수출제품관련 기술인증 현황

종 류	고안의 명칭(기술명)	등록번호	등 록 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실용신안)권자 기술권리자

주1) 종류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디자인, 프로그램 등록, 각 국가별 기술인증 등

주2) 출원(신청)중인 기술은 기재하지 마세요.

주3) 칸이 필요할 경우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세요.

다. 수출제품의 국내외 품질인증 현황규격 및 인증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주) 규격표시명

1. 시스템 인증 : ISO 9000, ISO 14000, QS 9000, TS 16949, TL 9000, OHSAS 18000, HACCP
2. 제품 인증 : KS, VCCI, JATE, DIN, SEE, UL, FDA, FCC, CE, CCC, VDE, GOST, JIS, e-mark, CSA
3. 기술마크 : AS, EM, 에너지 환경, GD, GQ, GR, 검마크, IR52, K마크, 전기안전, KT, NT, Q S, 안전, 우수

라. 기술개발 실적

구분 (자체/지원)	개발기술 개요	관련기술 활용여부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주1) 구분 : 자체 기술개발 또는 R&D지원 등 지원기관 보조로 구분

주2) 개발기술 개요 : 개발기술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주3) 관련기술 활용여부 : 활용여부 및 적용제품 등 기재

주4)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 지원기관의 보조를 받아 개발한 경우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명 기재

3. 인력 현황

가. 연구개발 인력 현황(총 명)

성 명	학 력(경력기간)	기술자격(경력기간)
	예) 박사(3년)	예) 기술사(5년)

* 학력 :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기재(표에는 주요 연구개발 인력만 기재)

* 기술자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재

나. 마케팅 인력 현황(총 명)

성 명	직책	수출업무 및 해외거주 경력

* 수출업무 경력 : 수출업무 경력기간, 담당업무 등 기재(표에는 주요 마케팅 인력만 기재)

다. 수출제품 납기관리 인력 현황(총 명)

성 명	경력

* 납기관리 인력 : 수출제품 납기관리를 위한 조직내 전문 관리인력(주요 납기관리 인력만 기재)

4. 해외시장 진출실적

구 분	중국내 지역	시기	투자금액
해외지사 또는 법인설립			
외국인자본 투자유치 성공			
중국 수출제품 브랜드(해당시)			*브랜드 이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KIAT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KIAT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KIAT에 제공하여, 중진공·Kotra·KIAT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상담·참여·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조회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KIAT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인)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표(내수, 제조업)

부 문	평가지표	점수	평가내용
I. 수출기반 단계	1-1 가격경쟁력(10)		
	1-2 생산기반 역량(10)		
	1-3 품질경영수준(10)		
	2-1 기술 차별화 역량(10)		
	2-2 기술보호 수준(10)		
	2-3 핵심기술개발역량(10)		
	소 계(60)		
II. 수출기획 단계	1-1 시장조사 수행역량(5)		
	1-2 시장정보 보유 수준(5)		
	1-3 조사결과 활용 역량(5)		
	2-1 체계적 수립 수준(5)		
	2-2 전략수립의 적절성(5)		
	2-3 전략의 실행가능성(5)		
	소 계(30)		
III. 판매실행 단계	1-1 전담조직 보유 수준(7.5)		
	1-2 전담인력의 전문성(7.5)		
	1-3 전담조직 관리 역량(7.5)		
	2-1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7.5)		
	2-2 세일즈 프로모션 활동(7.5)		
	2-3 외부 네트워크 활용(7.5)		
	소 계(45)		
IV. 지속성장 단계	1-1 연구개발 조직 보유(2.5)		
	1-2 신제품 개발 역량(2.5)		
	1-3 지적재산권 보유(2.5)		
	2-1 인프라 구축(2.5)		
	2-2 잠재고객 발굴 활동(2.5)		
	2-3 지속성장 경영활동(2.5)		
	소 계(15)		
V. 공통역량	1-1 부채비율(3)		
	1-2 유동비율(3)		
	1-3 매출액증가율(3)		
	1-4 총자산회전율(3)		
	1-5 영업이익률(3)		
	2-1 리더십(20)		
	2-2 경영진의 수출의지(15)		
	소 계(50)		
가점(6점)	각 항목별 1점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목색인증, 지역특구단지 입주기업, R&D 집약도 기업* * 재무제표상 R&D집약도 3%이상 기업		
	각 항목별 2점 경영혁신마일리지, '15년 마케팅 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중기청 R&D 성공기업(3년 미만), 명문장수기업 인증기업		
	각 항목별 3점 창업기업(7년미만), 소비자재 제조업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최근 3년간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 ROI 상위 5%이상 우수과제기업		
총 계(206)			

* 참여기업의 업종 및 수출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가점은 공고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 역량진단 세부평가 기준표 (내수, 제조업)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I. 수출기반단계	핵심제품경쟁력	10	■ 수출(예정) 핵심제품의 원가절감 전략 및 가격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수준 ① 원가 관리의 개념이 희박하고 제품의 가격 주도권을 위한 전략 부재(0점) ② 일반적 수준에서 원가를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원가절감방안을 구축(2.5점) ③ 제품별 원가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 부재(5점) ④ 제품별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7.5점) ⑤ 원가 변동 요인을 고려한 제품별 원가 절감 전략을 수립함(10점)
	생산기반역량	10	■ 수출(예정) 핵심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원자재의 공급업체가 다양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짐 - 생산가동률 목표의 설정, 목표 관리 및 가동률 개선을 위한 노력 있음 - 생산품에 대한 불량률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있음 - 생산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장비 개선에 관심 가짐 - 생산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교육, 복지혜택 등)가 이루어 짐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2.5점) ③ 2개 해당(5점) ④ 3개 해당(7.5점) ⑤ 4개 이상 해당(10점)
	품질경영수준	10	■ 수출(예정) 핵심제품의 품질경영활동 정착을 위한 활동 수준 ① 특별한 품질관리활동을 실천하지 않음(0점) ② 후행적 또는 사후적인 품질관리 활동만 실시함(2.5점) ③ 샘플 검사만을 통한 사전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함(5점) ④ 통계적 품질관리(SQC)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함(7.5점) ⑤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관리 DB분석과 피드백 활동을 통해 지속적, 체계적인 품질 경영활동을 실시함(10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I. 수출 기반 단계	핵심 기술 경쟁력	기술 차별화 역량	10	■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차별성 ①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음(0점) ② 기술의 차별화 수준이 낮아 다수의 경쟁업체가 보유하고 있음(2.5점) ③ 기술의 차별화 수준이 평이하여 일부 경쟁업체가 보유하고 있음(5점) ④ 기술의 차별화 수준이 높아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7.5점) (가점 2.5점)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수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감점 2.5점) 기업이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음
		기술보호 수준	10	■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모방용이성 - 기술개발시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이상임 - 개발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음 -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모방하기 어려움 - 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음 -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회사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2.5점) ③ 2개 해당(5점) ④ 3개 해당(7.5점) ⑤ 4개 이상 해당(10점) * 리버스엔지니어링: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역으로 추적하여 처음의 설계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기법
		핵심기술개발역량	10	■ 기업이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수준 ① 차별화된 핵심기술 없음(0점) ② 외부(개인 기업 등)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확보하는 수준(2.5점) ③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기술을 개발하여 확보하는 수준(5점) ④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확보하는 수준(7.5점) ⑤ 자체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수준(10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Ⅱ. 수출 기획 단계	중 국 진 출 관 련 조 사 및 분 석	시장조사 수행역량	5	■ 해외시장(고객)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 수준 - 개인적 인맥 혹은 문헌자료를 통한 시장조사 - 온라인을 통해 시장조사 후 바이어를 발굴하는 수준 - 자체적인 현지방문을 통해서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활동 실시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 수준의 시장조사 실시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2점) ③ 2개 해당(3점) ④ 3개 해당(4점) ⑤ 4개 이상 해당(5점)
		시장정보 보유수준	5	■ 조사내용적 측면의 적절성 - 시장 및 소비자 동향과 관련된 조사 실시 - 해당 수출국의 정부 정책 및 이슈 관련 조사 실시 - 경쟁사의 동향과 관련된 조사 실시 - 제품과 관련된 기술 관련 조사 실시 - 해당국에 수출을 위한 유통 관련 조사 실시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2점) ③ 2개 해당(3점) ④ 3개 해당(4점) ⑤ 4개 이상 해당(5점)
		조사결과 활용 역량	5	■ 조사된 내용의 효과적 활용과 관련된 수준 ① 시장조사 미실시(0점) ② 시장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관련된 수출전략이 부재함(2점) ③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구성원과 공유가 안 됨(3점) ④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보고서화 하여 구성원과 공유(4점) (가점 1점) 시장조사 내용이 구체적(수출국의 해당산업 최신정보)인 경우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II. 수출 기획 단계	수출 전략 수립	체계적 수립 수준	5	■ 수출전략 수립을 위한 전사적 목표 수립 및 관리 수준 ① 수출전략이 없음(0점) ② 정량적 수치(목표 수출액)를 기준으로 한 목표만을 수립하고 있음(2점) ③ 부서별 수출 전략의 연도별 목표와 실행과제가 수립되어 있음(3점) ④ 부서별 수출 전략의 연도별 목표/과제를 위한 관리지표(KPI)가 설정됨(4점) ⑤ 부서별로 설정된 관리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5점)
		전략수립의 적절성	5	■ 수출전략수립 내용의 타당성 - 글로벌 시장진입전략(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 전략적 제휴 등)와 관련된 전략이 수립되어있음 - 중국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이 목표시장 설정에 반영되어 있음 - 전략수립을 위한 마케팅 기법(STP, 4P, 3C 등)을 적절히 활용함 - 기업 내부 자원(예산,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음 - 수출대상국에 따른 국제무역협약(FTA, 관세협약 등)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2점) ③ 2개 해당(3점) ④ 3개 해당(4점) ⑤ 4개 이상 해당(5점)
		전략의 실행가능성	5	■ 수출전략수립의 (SMART* 관점) 실행가능성 수준 - 수출전략의 세부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수출전략의 전략 목표가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임 - 수출전략목표를 경영진이 설명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공유됨 - 수출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예산 및 인력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 - 수출전략이 단기적인 것부터 장기적 목표까지 모두 수립되어 있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2점) ③ 2개 해당(3점) ④ 3개 해당(4점) ⑤ 4개 이상 해당(5점) *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bounded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Ⅲ. 판 매 실 행 단 계	전 담 조 직 구 성	전담조직 보유 수준	7.5	■ 판매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보유 및 책임과 권한(R&R)의 명확성 ① 전담인력이 없으며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해결함(0점) ② 전담인력은 있으나 전담조직은 없음(1.5점) ③ 전담조직이 있으나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음(3.5점) ④ 판매전략 업무만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존재함(5.5점) ⑤ 전담조직과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판매전략 업무의 고도화가 이루어 짐(7.5점) * 판매전략 업무: 소비자 발굴, 영업,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전담인력: 판매전략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전담조직: 전담인력이 2인 이상인 판매전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전담인력의 전문성	7.5	■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의 전문성 ① 전담인력이 없음(0점) ② 전담인력의 판매전략 업무 관련 평균 경험이 3년 미만(1.5점) (전공자 or 자격증 보유자 50% 미만) ③ 전담인력의 판매전략 업무 관련 평균 경험이 3년 미만(3.5점) (전공자 or 자격증 보유자 50% 이상) ④ 전담인력의 판매전략 업무 관련 평균 경험이 3년 이상(5.5점) (전공자 or 자격증 보유자 50% 미만) ⑤ 전담인력의 판매전략 업무 관련 평균 경험이 3년 이상(7.5점) (전공자 or 자격증 보유자 50% 이상)
		전담조직 관리 역량	7.5	■ 전담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관리역량 수준 - 전담인력에게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 - 판매전략 업무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 전담조직의 인력확보/이직률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전담조직 인력과 경영진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간담회 등) 보유 - 전담인력/조직의 운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5점) ③ 2개 해당(3.5점) ④ 3개 해당(5.5점) ⑤ 4개 이상 해당(7.5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Ⅲ. 판 매 실 행 단 계	전 담 조 직 활 동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7.5 ■ 전담인력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준 - 제품 및 기업 소개를 위한 행사(제품전시회, 상품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고객의 소리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여 공유함 - 고객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및 인터뷰 활동을 실시함 -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2가지 이상 확보하고 있음 -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인증 및 수상을 획득한 적 있음 - 고객 만족도를 파악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한 실적이 있음 - 고객 정보를 DB화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신상품 소개, 할인 정보, 기업소개 등)을 하고 있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5점) ③ 2개 해당(3.5점) ④ 3개 해당(5.5점) ⑤ 4개 이상 해당(7.5점)
		세일즈 프로모션 활동	7.5 ■ 세일즈 프로모션을 위한 활동 수준 - 설명회 참여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소개한 적 있음 - 리베이트를 통해 판매 목표 달성 및 신규거래를 개척한 사례가 있음 - 각종 초대회(신상품 설명회, 공장견학 등)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한 샘플 제공, 할인행사, 무료 쿠폰을 제공 - 온라인 활동(홈페이지 구축, SNS 활동 등)을 통한 프로모션 실시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5점) ③ 2개 해당(3.5점) ④ 3개 해당(5.5점) ⑤ 4개 이상 해당(7.5점)
		외부 네트워크 활용	7.5 ■ 판매 활동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 수준 - 외부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행, 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 보유 - 판매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외부기관(A/S관련)과의 네트워크 보유 - 판매촉진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네트워크 보유 - 유사 업종의 경영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외부업체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5점) ③ 2개 해당(3.5점) ④ 3개 해당(5.5점) ⑤ 4개 이상 해당(7.5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IV. 지속성장단계	기업혁신기반	연구개발 조직 보유	2.5	■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 수준 ①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음(0점) ② 자체적 연구개발은 불가능하지만 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1점) ③ 연구개발 전담 담당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존재함(1.5점) ④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음(2점) (가점 0.5점)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 발생 실적이 있음
		신제품 개발 역량	2.5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의지 수준 ① 신제품 개발 계획이 없음(0점) ②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 보유함(1점) ③ 신제품의 시제품 제작을 착수하였음(1.5점) ④ 신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양산준비를 진행하고 있음(2점) 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음(2.5점)
		지적재산권 보유	2.5	■ 신제품 개발의 기반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조사 ① 0건(0점) ② 1 – 2건(1점) ③ 3 – 4건(1.5점) ④ 5 – 6건(2점) ⑤ 7건 이상(2.5점) -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실용신안 등록, 상표권 등록, 디자인 등록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IV. 지속성장 단계	판매 확대 기반	인프라 구축	2.5	■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준 -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통한 사업 네트워크가 형성됨 - 본사 이외의 영업 거점이 구축되어 있음 - 유사업종의 업체와 밀집된 곳에 위치하여 교류가 가능함 - ER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온라인 몰 등) -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점) ③ 2개 해당(1.5점) ④ 3개 해당(2점) ⑤ 4개 이상 해당(2.5점)
		잠재고객 발굴 활동	2.5	■ 고객의 잠재적 수요 발굴을 위한 활동(최근 3년간) - 잠재고객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계획 실시 - 광고 및 홍보 채널의 다양화(새로운 홍보채널 마련) -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한 신규 매출 발생 - 잠재고객 발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함 - 신규 거래처 발굴 실적이 있음 - 잠재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격정책을 수립함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점) ③ 2개 해당(1.5점) ④ 3개 해당(2점) ⑤ 4개 이상 해당(2.5점)
		지속성장 경영활동	2.5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실행하는 경영활동 - 기존고객의 재구매를 위한 전략이 존재함(마일리지, DB, 프로모션 등)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실시함 -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인증 및 수상실적(가족친화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여성친화적 기업 등) - 매출액 대비 복지후생비용의 비중이 5% 이상 - 직원 이직률이 10% 미만임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1점) ③ 2개 해당(1.5점) ④ 3개 해당(2점) ⑤ 4개 이상 해당(2.5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V.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3	■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측정 ① 300% 이상(0점) ② 200% 이상 300% 미만(1.5점) ③ 100% 이상 200% 미만(2점) ④ 50% 이상 100% 미만(2.5점) ⑤ 50% 미만(3점)
		유동비율	3	■ 기업의 단기적(1년 이내) 지급능력 측정 ① 50% 미만(0점) ② 50% 이상 100% 미만(1.5점) ③ 100% 이상 150% 미만(2점) ④ 150% 이상 200% 미만(2.5점) ⑤ 200% 이상(3점)
		매출액증가율	3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에 따른 기업의 성장성 측정 ① 2% 미만(0점) ② 2% 이상 5% 미만(1.5점) ③ 5% 이상 10% 미만(2점) ④ 10% 이상 20% 미만(2.5점) ⑤ 20% 이상(3점)
		총자산회전율	3	■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준 ① 2회 미만(0점) ② 2회 이상 5회 미만(1.5점) ③ 5회 이상 8회 미만(2점) ④ 8회 이상 11회 미만(2.5점) ⑤ 11회 이상(3점)
		영업이익률	3	■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와 효율성 측정 ① 1% 미만(0점) ② 1% 이상 3% 미만(1.5점) ③ 3% 이상 6% 미만(2점) ④ 6% 이상 9% 미만(2.5점) ⑤ 9% 이상(3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V. 글로벌 역량	경영자의 글로벌 역량	리더십	20	■ CEO의 글로벌마인드를 통한 리더십 역량 - CEO의 경영비전과 신념을 조직원과 공유하고 있음 - CEO의 높은 수출준비의지(수출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 조직원과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실시 - CEO의 교육 수준 및 실무경험 등을 활용한 지속적 역량 개발 실시 - 구성원들에게 수출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수출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어 지원받음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5점) ③ 2개 해당(10점) ④ 3개 해당(15점) ⑤ 4개 이상 해당(20점)
		경영진의 수출의지	15	■ 경영진의 수출준비 및 확대 의지(최근 2년간) - 경영진이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출교육을 1회 이상 참석 - 경영진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경영진이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경영진이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경영진이 해외마케팅관련 해외 출장을 다녀옴 - 경영진이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함 - 경영진의 수출과 관련된 개인 수상 내역 ① 0개 해당(0점) ② 1개 해당(3점) ③ 2개 해당(7점) ④ 3개 해당(11점) ⑤ 4개 이상 해당(15점)

※ 글로벌역량평가 기준에 따라 업종(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소비자서비스업) 및 수출실적(내수/수출초보/수출유망/수출강소)으로 구분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3년차 신청기업 대면평가표

既 참여연도 ☐ 14년 ☐ 15년 ☐ 16년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	-----	--	-----------	-----

부 문	항 목	배점	점수	평점
I. 보조금 집행 우수성 (20점)	1. 집행액 규모	10	10 8 6 4 2	
	2. 계획대비 집행률	10	10 8 6 4 2	
	소계	20		
II. 중국진출 수준 (30점)	1. 既 사업 참여년도 결과 우수성	10	10 7 4	
	2. 중국수출증가율	15	15 12 9 6 3	
	3. 중국 첫 수출 달성여부	5	5 0	
	소계	30		
III. 진출 계획 우수성 (50점)	1. 추진의향 프로젝트의 구체성(현실성 등)	25	25 20 15 10 5	
	2. 추진의향 프로젝트의 참신성(유의성 등)	25	25 20 15 10 5	
	소계	50		
합 계		100		

평 가 일 자	소 속	직 위(급)	평 가 자 성 명	서 명
기 타 평 가 의 견				

첨부 : 세부 배점 기준표

< 세부 배점 기준표 >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보조금 집행 우수성 (20)	1. 집행액 규모	10	- 총 지원보조금 한도 중 실제(활용) 집행액 한도 대비 95%이상 활용 (10점), 90%이상~95%미만 (8점), 80%이상~90%미만 (6점), 65%이상~80%미만(4점), 65%미만(2점)
	2. 계획대비 집행을	10	- 신청(계획) 보조금 대비 실 집행을 95%이상 활용 (10점), 90%이상~95%미만 (8점), 85%이상~90%미만 (6점), 80%이상~85%미만(4점), 80%미만(2점)
참여성과 우수성 (30)	1. 기 참여년도 사업결과의 우수성	10	- 사업 참여년도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내용 평가 (주요 추진내용, 성과 등) 우수(10점), 보통(7점), 미흡(4점)
	2. 중국 수출증가율 (직수출액 기준 무역협회/무역통계진흥원자료만 인정)	15	- 사업참여 직전년도 대비 참여년도 중국수출 증가율 ($\frac{\text{참여년도 평균 중국수출액} - \text{참여년도 직전 중국수출액}}{\text{참여년도 직전 중국수출액}} \times 100$) 0%이하 (3점), 0%초과~2%이하 (6점), 2%초과~4%이하 (9점), 4%초과~7%이하 (12점), 7%초과 (15점)
	3. 중국 첫 수출 달성 (직수출액 기준 무역협회/무역통계진흥원자료만 인정)	5	- 사업참여 직전년도 대비 중국 첫 수출액 달성여부 평가 (중국 첫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평가 지표) 첫 수출 달성시 (5점)
진출 계획 우수성 (50)	1. 구체성,체계성 등	25	-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를 평가 매우우수(25), 우수(20), 보통(15), 미흡(10), 매우미흡(5)
	2. 참신성, 유의성(효과성) 등	25	-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통해 꼭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 현지 진출에 효과적인 직·간접 마케팅 내용인지 여부를 평가 매우우수(25), 우수(20), 보통(15), 미흡(10), 매우미흡(5)

【별지 제6호 서식】

수출지원서비스 사용계획서

참여기업명				바우처총액	
-------	--	--	--	-------	--

시기(년도/월)		서비스		예상비용(원)	비고
		대분류	중분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별지 제7호 서식】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추진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주체) 본 협약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	운영기관(이하 “갑”)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116-82-01561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참여기업	운영기관(이하 “을”) : 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소 : 00000000000000

제3조(바우처 집행 및 협약 기간) 바우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상의 세부지원서비스 활용에만 사용하며, 바우처 집행은 협약기간 내에 종료한다.
협약기간 : 2017.00.00 ~ 2018.00.00

제4조(협약의 금액)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바우처 총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운영기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 000,000,000원 국고 보조금 : 000,000,000원 바우처 : 000,000,000원
-------	--

제5조(성실의 의무)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바우처 교부(정산) 신청 시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바우처(국고 보조금, 본인 부담금)의 지출내역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취소 및 환수)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 부담금을 운영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을”의 부도, 휴폐업 등 협약해지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5조 또는 제6조의 조항을 “을”이 위반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을”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 . .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인)

(참여기업) 상호명 :

대표자 : (인)

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00000 프로그램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주) _____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00000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참여기업”이 요청하는 00000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00000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공하는 용역범위)	
------------------------	--

② “참여기업”의 00000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에 관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추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가지급 및 검사)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2조제1항의 용역 수행 대가를 아래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침에 의거 기업부담금 전액을 “운영기관”에게 우선 지급한다.

1.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선금의 경우) 또는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참여기업”의 부가세 해당액을 수령한 후 “운영기관”에 정부보조금 및 운영기관이 관리중인 기업부담금(이하 “서비스금액”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다.

2. “수행기관”은 서비스금액 선금 신청 시 이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용역 계약기간에 90일을 가산한다.

3.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부가세 해당액 신청 시 이에 해당하는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참여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용역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수행기관”이 공공기관이거나 해외기업인 경우 2호, 3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영기관” 대상 보증기호 : 협약지원금(보조금 및 부담금), “참여기업” 대상 보증기호 : 기타선금2(부가세 해당액)

4. “운영기관”은 “수행기관”의 서비스금액 정산신청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금액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소계	부가세	총계
착수금 (30%)					
최종용역비 (70%)					
총 계					

* 정부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에는 VAT미포함

② “수행기관”은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참여기업”에게 납품하고 용역수행결과를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중간보고: 201 년 월 일까지(해당시 기재)

2. 최종보고: 201 년 월 일까지

③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진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기간내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이 용역 수행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본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기업”의 업무상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 등)에 대하여 계약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참여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된 중간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을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 당사자가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매, 기업회생절차절차를 개시한 경우
3.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
4. 전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등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수행 간 발생한 해지비용에 대한 사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기 집행된 서비스금액 및 부가세 해당액을 반환해야 하며, 서비스금액은 운영기관에 전액 반환하고, 부가세 해당액은 참여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에 계약해지 사실을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 일방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기 지급받은 서비스금액을 공문 통보 후 2주 이내에 “운영기관”에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제5조 각호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9조(재판관할) 이 계약의 관할은 “참여기업”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0조(기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기업부담금 리베이트, 서비스금액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될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취소, 기 지급된 서비스금액 환수, 신규참여제한,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수행기관)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인생략

[별첨 1] 용역 수행 대가 세부 산출내역(예시 : 컨설팅)

컨설팅 용역 수행 대가 세부 산출내역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명 참여중소기업명 : 중소기업명 계약금액 : 금 20,000,000원정(V.A.T 별도) (단위: 원)					
구분	지원내용	금액	구성비(%)	세부내역	비고
1) 인건비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3,000,000	15	투입인력명 기재	
	홍보물 제작 및 광고게재	1,000,000	5		
	타깃리스트 작성 및 접촉	4,000,000	20		
	전시회 미팅 및 시연회 지원	1,000,000	5		
	가격협상, 계약지원	2,000,000	10		
	소계	11,000,000	55		
2) 경비	시장조사 및 전략수립	1,000,000	5	경비세부내역 기재	
	홍보물 제작 및 광고게재	1,000,000	5		
	타깃리스트 작성 및 접촉	3,000,000	15		
	전시회 미팅 및 시연회 지원	2,000,000	10		
	가격협상, 계약지원	1,000,000	5		
	소계	8,000,000	40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000,000	5		(1+ 2)*5%
4) 계약금액		20,000,000	100		1)+ 2)+ 3)
5) 부가세		2,000,000			4)*10%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내용은 계약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
- 총 경비에서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금액 산정(VAT 제외)
- 세부단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요 경비의 포함여부는 반드시 명시할 것
(예 : 인쇄비, 번역비, 광고 게재료, 항공료 등)

[별첨 2] 투입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명	주요 이력사항	외주 구분
주요 업무 기재	성명 기재	- 학력, 주요 경력사항 등에 대해 기재	내/외부 구분
<예시> - 프로젝트 총괄			내부
- 시장조사 담당			외부
- 타깃 바이어 발굴 및 접촉			내부

【별지 제9호 서식】

개별참가 해외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결과 보고서

1. 기본 정보 *

1-1) 기업 기본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1-2) 담당자 정보				
이름	국문		영문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이메일	

※주) 회원정보로 자동 입력됨

2. 주요 내용 I

2-1.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국 문				
	영 문				
	약 칭				
개최기간					
주관기관			주최기관		
2-2. 전시회 참가 내역					
참가형태	기본부스(Shell Scheme) / 독립부스(Raw Sapce)				
참가규모	부스수 / 출장인원수				
2-3. 지원금 요청 내역					
지원 요청내역	구분	소요 비용	화폐단위	기준 환율	지원 요청액(원)
	① 부스임차료				
	② 장치비				
	③ 운송비				
	④ 기타				
실 지원 요청내역	구분	소요 비용	화폐단위	기준 환율	지원 요청액(원)
	① 부스임차료				
	② 장치비				
	③ 운송비				
	④ 기타				
계좌정보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전시회정보로 자동입력됨

3. 주요내용 II

3-1) 참가 성과					
상담 바이어수					
상 담 액 (필수)					
계약 추진액 (필수)					
바이어별 상담내역 ※ 표준상담양식으로 대체 가능	(바이어명1)	1.상담액 2.계약액 3. 주요내용(상담품목, 바이어 반응 등)			
	(바이어명2)	"			
	(바이어명3)	"			
	(바이어명4)	"			
	(바이어명5)	"			
	(바이어명6)	"			
	(바이어명7)	"			
3-2) 참가기업 만족도					
참가성과 만족도	매우만족 ()	만 족 ()	보 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만족/불만족 사유					
향후 참가여부	참가 () / 불참 ()				
3-3) 기타정보					
결과 기타 항목	전시제품에 대한 현지시장 반응 / 건의사항 / 전시회 관련정보				

4. 부스 및 전시장 사진

전시장 입구	전시장 전경
참여기업 부스사진 ①	참여기업 부스사진 ②
<사진제목>	<사진제목>

5. 상담바이어 명함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바이어 회사명(국가)	바이어 회사명(국가)
<명함사진 첨부>	<명함사진 첨부>

상기한 바와 같이 전시회 참가에 따른 자금 지원을 신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회사명판)

(직인)

해외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표준상담양식 [표준 세일즈 리드 양식]

(1 페이지)

일 시 | 2017. 00. 00(00:00)

1. 참관객 정보

성명		부서		직위	
회사명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 명함으로 대체 가능

2. 상담품목

1. 관심품목	
2. 구매시기	
3. 구매예산	
4. 구매금액	(현장 구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여기 기재되는 현장 상담, 계약성과 집계
5. 구매결정자 정보	(성명, 직위, 부서)

3. 내방객 요청내용

1. 추가상담요청	(날짜)
2. 제품소개자료요청	(날짜)
3. 내방객 언급내용	
4. 특기사항	

(2페이지)

4. 구매력 평가

구매력	유	무	구매력 등급	A	B	C
-----	---	---	--------	---	---	---

5. 사후처리

1. 사후처리 담당자	
2. 사후처리 내용	■ 개별접촉내용(날짜: 2017. .) ■ 제품소개자료 발송 (날짜: 2017. . .) ■ 기타
3. 판 매 실 적	
■ 품목	
■ 판매액	

* 여기 기재되는 사후 상담, 계약성과 집계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결과보고서

서비스명				
신청기업	담당자명		전자우편	
	연락처		핸드폰	
목 적				
내 용				
결 과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결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소요예산 (VAT별도)	사 업 비		(예시) 71,500,000원	
	정부보조금		50,000,000원	
	기업부담금		21,500,000원	
사업기간	2016년 월 일 ~ 월 일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며, 검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 소요예산은 신청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II. 세부추진결과 (세부이행결과는 10페이지 내외, 추진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함)

1. 목적

2. 추진 필요성

* 추진필요성을 상세히 기재

3. 추진내용

* 자음마케팅 이행결과를 프로젝트 단위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기재

4. 사업추진체계

5. 사업추진 결과 (1페이지 결과를 자세히 풀어서 작성)

* 추진 세부 프로젝트 별로 가시적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 정량적 및 정성적 결과 기재

6. 소요예산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세부 서비스	세부 산출내역	총사업비		총 계
		정부 보조금	업체 부담금	
중국법인 설립	· 수행기관 법인설립 대행료 : 10,000	7,000	3,000	10,000
온라인 홍보	· 현지 검색엔진 마케팅 비용 : 2,000*3개월 ·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 : 5,000	7,700	3,300	11,000
시장조사 등	· 시장조사 및 제품홍보 등	7,000	3,000	10,000
중국전시회	· 중국전시회 참가	8,000	3,500	11,500
바이어 초청	· 바이어 초청 항공료	7,000	3,000	10,000
인허가 등록	· 중국 인허가 등록	13,300	5,700	19,000
계		50,000	21,500	71,500

* 위 예시는 정부보조금 최고 지원한도(5천만원)로 신청할 경우를 가정